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회)	

공소청과그소속기관직제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법」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이 각각 이루어짐에 따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검사 이외의 공소청 공무원 정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검사 외 공무원의 정원(안 제2조)

- 1) 공소청에 404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2명, 4급 이하 396명, 전문경력관 5명)의 정원을 둠
- 2)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5,716명(고위공무원단 25명, 3급 또는 4급 16명, 4급 이하 5,675명)의 정원을 둠

나. 공소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공소청에 대변인, 인권정책관, 법과학기획관, 기획조정부, 형사부, 공공안전부, 중대범죄부, 공판송무부, 검찰부 및 사무국을 두고, 각 기구의 분장사항을 규정함

다. 광역공소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서울광역공소청에 형사부·공판부·송무부 및 검찰부를, 서울광역공소청 사무국에 총무과·사건과·소송사무과 및 관리과를, 수원·대전·대구·부산 및 광주광역공소청에 총무과 및 사건과를 각각 두고, 각 기구의 분장사항을 규정함

라.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8조부터 제46조까지)

18개 지방공소청(서울중앙·서울동부·서울남부·서울북부·서울서부·의정부·인천·춘천·수원·대전·청주·대구·부산·울산·창원·광주·전주·제주) 및 차장검사를 두는 10개 지청(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을 비롯한 60개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부, 사무국 및 과를 규정하고, 각 기구의 분장사항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비비에서 집행할 계획임

다. 합의 :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입법예고(2026. 0. 0. ~ 0. 0.) 결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직무범위와 검사 이외의 공소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공소청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소청을 제외한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청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각급 공소청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공소청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서기관·형사법무사무관 1명),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1명(형사법무주사보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2명(형사법무사무관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형사법무사무관 1명, 형사법무주사 1명) 및

공무직 근로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형사법무주사 1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⑤ 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총정원 중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27명(형사법무주사보 2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정원에서 서기관·형사법무사무관 53명 중 31명과 형사법무사무관 295명 중 91명은 「공소청법」 제38조에 따라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직무대리의 정원으로 본다.

⑦ 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총정원 중 특허 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5명(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명)은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2장 공소청

제3조(대변인) ① 검찰총장 밑에 대변인을 두며, 대변인은 검사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검찰총장을 보좌한다.

1. 공소청 업무의 대외 공표에 관한 사항
2. 공소청의 홍보기획에 관한 사항

3. 보도자료 관리·분석,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에 대한 분석·관리
4.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 협조, 행사 및 통계 관리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7. 그 밖에 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항

제4조(인권정책관) ① 공소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해 인권정책관을 두며, 인권정책관은 검사로 보한다.

② 인권정책관 밑에 인권기획담당관, 인권감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검사로 보한다.

③ 인권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1. 검사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의 기획,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검사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검토·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검사사무와 관련된 인권보호 과제 발굴,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교육 자료 보급 등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5. 인권 관련 기관·단체·전문가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검사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7.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

8. 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협력에 관한 사항

④ 인권감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1.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의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사항

2. 검사사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 감독, 검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검사사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수립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1. 공소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2. 공소청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3. 공소청 내 성희롱·성추행 신고 접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성차별 등 성 관련 고충민원 상담에 관한 사항

5. 검사사무와 관련된 성차별 점검 및 양성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

6. 양성평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법과학기획관) ① 공소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해 법과학기획관을 두며, 법과학기획관은 검사로 보한다.

② 법과학기획관 밑에 법과학감정담당관, 첨단·심리분석담당관, 디지털포렌식시스템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검사로 보한다.

③ 법과학감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보좌한다.

1.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법과학업무 기획, 법령 검토, 종합계획의 수립 등 법과학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과학 연구개발, 품질관리(KOLAS 등), 연구용역·시험용역 등 법과학 연구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공소제기 결정 등 처분, 공소유지, 형집행 등과 관련된 문서감정, DNA 감정, 법생물 감정, 마약 감정, 화학 감정, 화재 감정 등 감정·감식에 관한 사항

4. 법과학 업무 관련 교류·협력·국제공조 등에 관한 사항

5. 최신 감정·감식 기법에 관련된 국내외 학술정보의 교류·협력·수집·분석 등에 관한 사항

6. 디엔에이 및 법화학 감식시료의 분석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설비·장비·기구의 확보·개발

및 운영, 관계법령 검토, 지도·교육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과학기획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첨단·심리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보좌한다.

1. 과학적 면담 등 진술·심리 분석 등에 관한 사항

2. 영상·음성 등 멀티미디어 관련 분석 및 감식 등에 관한 사항

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디엔에이인적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가상자산 추적, 가상자산 진정성 분석, 정보통신망침해 분석, 거래내역 분석 지원 및 통신집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사이버범죄·기술유출범죄(이하 “사이버·기술범죄”라 한다)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지휘·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5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7. 제5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탄원 등 기타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설비·장비·기구의 확보·개발·운영, 연구개발·품질관리, 관계 법령 검토, 유관기관 협력 및 지도·교육 등에 관한 사항

⑤ 디지털포렌식시스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보좌한다.

1. 전자적 증거의 관리·분석 및 감정·감식에 관한 사항

2. 전자적 증거의 관리·분석 및 감정·감식 기법, 연구개발 및 시스템·도구에 대한 검증 및 관련 인정·표준에 관한 사항

3. 전자적 증거의 관리·분석 및 감정·감식을 위한 시스템·도구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전자적 증거의 관리·분석 및 감정·감식을 위한 시스템·도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전자적 증거의 관리·분석 및 감정·감식 관련 법령 검토 등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직원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지원·교육·역량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6조(공소청 사무국) ① 공소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공소청 사무국장 밑에 운영지원과 및 복지후생과를 두며,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복지후생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상훈·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발송·편찬·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7. 차량의 유지·운영에 관한 사항
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복지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후생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청사의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

⑤ 사무국장 밑에 비상안전담당관 1명을 두며,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소청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계획조정 및 확인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의 관리
4.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제7조(공소청에 두는 부와 공소청 검사의 직무) ① 공소청에 기획조정부, 형사부, 공공안전부, 중대범죄부, 공판송무부 및 검찰부를 두며, 각 부장은 공소청 검사로 보한다.

② 공소청 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항고 사건을 처리한다.

제8조(공소청 기획조정부) ① 기획조정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공소청 기획조정부장 밑에 정책기획담당관, 형사정책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을 검사로 보한다.

③ 정책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부장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의 진행 상황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5. 법령질의 및 개정건의에 관한 사항
6.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7. 검사의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8. 행정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9. 통계에 관한 사항

10. 각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범죄통계의 수집 및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11. 공소청 관계 간행물 기타 자료발간 및 이에 관련된 사항

12. 도서관리 및 이에 관련된 사항

13.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형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부장을 보좌한다.

1. 공소청 조직과 기능 등 제도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형사사법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의 연구에 관한 사항

3. 형사사법 관련 제도 및 형사정책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⑤ 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부장을 보좌한다.

1. 업무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통신에 관한 사항

4.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5. 전산장비·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기타 공소청 전산·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부장을 보좌한다.

1. 국제공조 등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2.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3. 국제 수형자 이송에 관한 사항
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범
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형사에 관한 외국기관·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및 국제회의 개
최·참가에 관한 사항
6. 국제형사사법 관련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형사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9조(공소청 형사부) ① 형사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공소청 형사부장 밑에 형사기획관 1명을 두며, 형사기획관은 검사
로 보한다.

③ 형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형사부장을 보좌한다.

1. 형사부 소관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의 지휘·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형사부 소관 사건과 관련된 연구, 대응지침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
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3. 형사부 소관 사건, 사무에 관한 기획·조정 및 유관기관 협조에 관

한 사항

4. 제1호에 따른 검사사무 지원을 위한 국제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④ 공소청 형사부에 형사1과, 형사2과, 형사3과 및 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검사로 보한다.

⑤ 형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교통·소년 사건 및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에 대한 지도·교양 및 사법경찰관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탄원 등 기타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사법경찰관에 대한 일반적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선도에 관한 사항

7. 소년 관련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8.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형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가. 강력·폭력 사건 및 스토킹 사건

나. 제2항 제1호 및 제5항 제2호의 사건 중 서민을 대상으로 다중 피해를 야기한 사건

다. 서민을 대상으로 다중 피해를 야기한 사건 중 검찰총장이 지휘·감독을 하도록 명하는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에 대한 지도·교양 및 사법경찰관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탄원 등 기타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⑦ 형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에 대한 지도·교양 및 사법경찰관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탄원 등 기타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여성보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6. 보호처분(소년 관련 보호처분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⑧ 특별사법경찰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상호 협력 및 지도·조언에 관한 사항
2. 환경·보건·식품·지식재산권·관세·부동산 사건 및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사건(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 한정)에 대한 검사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3. 제2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4. 제2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에 대한 지도·교양 및 사법경찰관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2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탄원 등 기타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10조(공소청 공공안전부) ① 공공안전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공소청 공공안전부에 안보과, 선거과 및 노동과를 두며, 각 과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 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공·테러·출입국·남북교류협력·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 처분(이하 “보안관찰처분”이라 한다)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에 대한 지도·교양 및 사법경찰관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탄원 등 기타 사건의 처리에 관

한 사항

5.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선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거사건, 정당·정치자금 등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에 대한 지도·교양 및 사법경찰관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탄원 등 기타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 노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 관련 사건, · 집단행동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에 대한 지도·교양 및 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탄원 등 기타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11조(공소청 중대범죄부) ① 중대범죄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공소청 중대범죄부장 밑에 중대범죄기획관 1명을 두며, 중대범죄기

획관은 검사로 보한다.

③ 중대범죄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대범죄부장을 보좌한다.

1. 중대범죄부 소관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의 지휘·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대범죄부 소관 사건과 관련된 연구, 대응지침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3. 중대범죄부 소관 사건, 사무에 관한 기획·조정 및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따른 검사사무 지원을 위한 국제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④ 공소청 중대범죄부에 중대범죄1과, 중대범죄2과, 중대범죄3과를 두며, 각 과장은 검사로 보한다.

⑤ 중대범죄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공공단체의 직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뇌물죄 적용대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탄원 등 기타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에 대한 지도·교양 및 사법경찰관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중대범죄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증권범죄사건, 조세·공정거래범죄사건, 대규모 경제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탄원 등 기타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에 대한 지도·교양 및 사법경찰관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⑦ 중대범죄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사건 및 조직범죄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탄원 등 기타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에 대한 지도·교양 및 사법경찰관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제12조(공소청 공판송무부) ① 공판송무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공소청 공판송무부에 공판1과, 공판2과, 범죄수익환수과 및 집행과를 두며, 공판1과장·공판2과장 및 범죄수익환수과장은 검사로, 집행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 보한다.

③ 공판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상고사건의 공판에 관한 사항
3. 공판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4. 상고사건의 압수물 사무에 관한 사항
5. 공소청 사건처리기준 및 양형기준의 정립·개선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공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판례의 수집·연구에 관한 사항
2.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그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4. 송무관계 판례의 수집·연구에 관한 사항
5. 송무사무의 보고 및 송무통계에 관한 사항
6. 헌법소원등 헌법재판과 관련한 사항
7. 상고사건의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
8.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9. 상고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⑤ 범죄수익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지원에 관한 검사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무에 관한 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무에 관한 진정·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무에 관한 연구, 대응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무에 관한 직원에 대한 지도·교양 및 사법경찰관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6.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⑥ 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산형의 집행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상고사건의 벌과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

제13조(공소청 검찰부) ① 검찰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공소청 검찰부에 검찰1과, 검찰2과 및 검찰3과를 두며, 각 과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 검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공소청법」 제29조에 따

른 공소청검사등 검사(이하 “공소청검사등 검사”라 한다) 및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는 제외한다)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탄원 등 기타 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3.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및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감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2.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3.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⑤ 감찰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소청검사등 검사 및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의 비위에 관한 조사·정보수집·관리 및 진정·탄원 등 기타 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감찰에 관한 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검토·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4조(공소청연구관) 공소청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총장이 명하는 검사사무에 관한 기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

제3장 광역공소청

제15조(서울광역공소청에 두는 부) ① 서울광역공소청에 형사부, 공판부, 송무부 및 검찰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사항
3. 기타 공소청장이 명하는 사항과 다른 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공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판에 관한 사항
2. 형(재산형을 제외한다)의 집행 및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3. 상소에 관한 사항
4. 판례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6.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7. 제1호와 관련된 사항

④ 송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3. 소제기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4. 재판의 집행과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

5. 구상권의 행사와 부당이득의 회수에 관한 사항
6. 송무관계 판례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지구배상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관한 사항

⑤ 감찰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탄원 등 기타 사건의 조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사항
3. 사무감사·기강감사 및 무죄사건의 평정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관련 항고사건 중 공소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16조(광역공소청 사무국) ① 각 광역공소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각 광역공소청의 사무국에 별표 3과 같이 과를 두며,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사건과장·소송사무과장 및 관리과장은 각각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상훈·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발송·통제·편찬·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법령에 관한 사항
 6.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7. 예산운영·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물품구매·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산·통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각 광역공소청 산하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침단범죄 사건 등 전자적 증거의 분석업무 지원
 12.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검사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진정·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압수금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통계에 관한 사항
 6.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8.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9.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공소청법」 제21조의 사건심의위원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소송사무과장은 제15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단, 소송사무과를 두지 않는 광역공소청에서는 그 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⑥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단, 관리과를 두지 아니한 광역공소청에서는 그 사무를 총무과장이 분장한다.

1.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사의 보수·유지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⑦ 공판부를 두지 아니한 광역공소청에서는 제15조제3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제4장 지방공소청 및 지청

제17조(서울중앙지방공소청 차장검사) 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3명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제2차장검사 및 제3차장검사로 한다.

② 제1차장검사는 제18조에 따라 두는 부 중 사법통제제1부, 사법통제제2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

제6부, 공판·송무제1부 및 공판·송무제2부의 사무에 관하여 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③ 제2차장검사는 제18조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7부, 형사제8부, 형사제9부, 여성·아동범죄전담제1부, 여성·아동범죄전담제2부, 공공·형사제1부, 공공·형사제2부, 공판·송무제3부, 공판·송무제4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④ 제3차장검사는 제18조에 따라 두는 부 중 중대범죄전담제1부, 중대범죄전담제2부, 중대범죄전담제3부, 중대범죄전담제4부, 중대범죄전담제5부, 중대범죄전담제6부, 범죄수익환수부 및 공판·송무제5부의 사무에 관하여 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소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제1차장검사
2. 제2차장검사
3. 제3차장검사

⑥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 중에서 공소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8조(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사법통제제1부, 사법통제제2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형사제7부, 형사제8부, 형사제9부, 여성·아

동범죄전담제1부, 여성·아동범죄전담제2부, 공공·형사제1부, 공공·형사제2부, 중대범죄전담제1부, 중대범죄전담제2부, 중대범죄전담제3부, 중대범죄전담제4부, 중대범죄전담제5부, 중대범죄전담제6부, 범죄수익환수부, 공판·송무제1부, 공판·송무제2부, 공판·송무제3부, 공판·송무제4부 및 공판·송무제5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사법통제제1부장 및 사법통제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공소청장이 정한다.

1.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기록송부 사건(송치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 및 수사중지 기록송부 사건(시정조치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97조의3 및 제245조의8 등에 따른 직무배제·징계요구 등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항고 및 재항고 인용으로 재기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5. 수사 관련 구제 신청 및 진정에 관한 사항
6.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등재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
7.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9. 그 밖에 공소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형사제5부장, 형사제6부장, 형사제7부장, 형사제8부장 및 형사제9부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공소청장이 정한다.

1.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법원이 발부하는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④ 여성·아동범죄전담제1부장 및 여성·아동범죄전담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공소청장이 정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스토킹·장애인·노인·소년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⑤ 공공·형사제1부장 및 공공·형사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공소청장이 정한다.

1. 공안·선거·노동관계 사건의 처리 및 공판수행에 관한 사항

2.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항

5.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⑥ 중대범죄전담제1부장, 중대범죄전담제2부장, 중대범죄전담제3부장, 중대범죄전담제4부장, 중대범죄전담제5부장 및 중대범죄전담제6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공소청장이 정한다.

1.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 각종 부패사건 및 이에 준하는 중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중요 기업·경제범죄 사건 및 이에 준하는 중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마약·강력 관련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공정거래 관련 사건 및 이에 준하는 중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 정보기술 관련 사건 및 이에 준하는 중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조세 관련 사건 및 이에 준하는 중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11. 그 밖에 공소청장이 정하는 사항

⑦ 범죄수익환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에 관한 사항
2.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⑧ 공판·송무제1부장, 공판·송무제2부장, 공판·송무제3부장, 공판·송무제4부장 및 공판·송무제5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공소청장이 정한다.

1. 공판에 관한 사항
2. 형(재산형을 제외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상소에 관한 사항
4. 판례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6.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7.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제19조(서울동부지방법공소청에 두는 부) ① 서울동부지방법공소청에 사법통제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여성·아동범죄전담부, 중대범죄전담제1부, 중대범죄전담제2부 및 공판·

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사법통제부장은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8조제3항·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18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중대범죄전담제1부장 및 중대범죄전담제2부장은 제18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 및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공소청장이 정한다.

1. 사이버범죄 등 첨단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⑥ 공판·송무부장은 제18조제7항·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20조(서울남부지방공소청 차장검사) ①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명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② 제1차장검사는 제21조에 따라 두는 부 중 사법통제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여성·아동범죄전담부 및 공판·송무부의 사무에 관하여 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③ 제2차장검사는 제21조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5부, 공공·형사부, 중대범죄전담제1부, 중대범죄전담제2부, 중대범죄전담제3부, 범죄수익 환수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④ 서울남부지방공소청 공소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제1차장검사

2. 제2차장검사

⑤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1조(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①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사법 통제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여성·아동범죄전담부, 공공·형사부, 중대범죄전담제1부, 중대범죄전담제2부, 중대범죄전담제3부, 범죄수익환수부 및 공판·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사법통제부장은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 부장은 제18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18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형사부장은 제18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중대범죄전담제1부장, 중대범죄전담제2부장 및 중대범죄전담제3부장은 제18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 및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간의 사무분담은 공소청장이 정한다.

1. 금융·증권 관련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가상자산 관련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 및 2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⑦ 범죄수익환수부장은 제18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⑧ 공판·송무부장은 제18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22조(서울북부지방법공소청에 두는 부) ① 서울북부지방법공소청에 사법통제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여성·아동범죄전담부, 중대범죄전담부 및 공판·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사법통제부장은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18조제3항·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간의 사무분담은 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18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중대범죄전담부장은 제18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공판·송무부장은 제18조제7항·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서울서부지방법공소청에 두는 부) ① 서울서부지방법공소청에 사법통제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여성·아동범죄전담부, 중대범죄전담부 및 공판·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사법통제부장은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18조제3항·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18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중대범죄전담부장은 제18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 및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공소청장이 정한다.

1. 식품의약 관련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⑥ 공판·송무부장은 제18조제7항·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24조(의정부지방법공소청에 두는 부) ① 의정부지방법공소청에 사법통제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중대범죄전담부 및 공판·송무부

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사법통제부장은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공소청장이 정한다.

⑤ 중대범죄전담부장은 제18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 및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공소청장이 정한다.

1. 환경 관련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⑥ 공판·송무부장은 제18조제7항·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25조(인천지방공소청 차장검사) ① 인천지방공소청에 차장검사는 2명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② 제1차장검사는 제26조에 따라 두는 부 중 사법통제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및 여성·아동범죄전담부의 사무에 관하여 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③ 제2차장검사는 제26조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5부, 공공·형사부, 중대범죄전담부, 공판·송무부, 공판·환수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④ 인천지방법공소청 공소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제1차장검사

2. 제2차장검사

⑤ 인천지방법공소청 차장검사 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6조(인천지방법공소청에 두는 부) ① 인천지방법공소청에 사법통제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여성·아동범죄전담부, 공공·형사부, 중대범죄전담부, 공판·송무부 및 공판·환수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사법통제부장은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8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18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형사부장은 제18조제5항·제6항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중대범죄전담부장은 제18조제6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⑦ 공판·송무부장은 제18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⑧ 공판·환수부장은 제18조제7항·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27조(춘천지방법공소청에 두는 부) ① 춘천지방법공소청에 사법통제부, 형사제1부 및 형사제2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사법통제부장은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18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공소청장이 정한다.

제28조(수원지방법공소청 차장검사) ① 수원지방법공소청에 차장검사는 2명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② 제1차장검사는 제29조에 따라 두는 부 중 사법통제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및 여성·아동범죄전담부의 사무에 관하여 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③ 제2차장검사는 제29조에 따라 두는 부 중 공공·형사부, 중대범죄전담제1부, 중대범죄전담제2부, 중대범죄전담제3부, 공판·송무부, 공판·환수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④ 수원지방법공소청 공소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제1차장검사

2. 제2차장검사

⑤ 수원지방법공소청 차장검사 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

장검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9조(수원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① 수원지방공소청에 사법통제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여성·아동범죄전담부, 공공·형사부, 중대범죄전담제1부, 중대범죄전담제2부, 중대범죄전담제3부, 공판·송무부 및 공판·환수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사법통제부장은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8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18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형사부장은 제18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중대범죄전담제1부장, 중대범죄전담제2부장 및 중대범죄전담제3부장은 제18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 및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공소청장이 정한다.

1. 산업기술 범죄사건 및 방위사업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⑦ 공판·송무부장은 제18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⑧ 공판·환수부장은 제18조제7항·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0조(대전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① 대전지방공소청에 사법통제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여성·아동범죄전담부, 공공·형사부, 중대범죄전담제1부, 중대범죄전담제2부, 중대범죄전담제3부 및 공판·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사법통제부장은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18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18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형사부장은 제18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중대범죄전담제1부장, 중대범죄전담제2부장 및 중대범죄전담제3부장은 제18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 및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공소청장이 정한다.

1. 특허·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국가재정범죄 관련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⑦ 공판·송무부장은 제18조제7항·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1조(청주지방법공소청에 두는 부) ① 청주지방법공소청에 사법통제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및 중대범죄전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사법통제부장은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중대범죄전담부장은 제18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2조(대구지방법공소청에 두는 부) ① 대구지방법공소청에 사법통제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아동범죄전담부, 공공·형사부, 중대범죄전담부 및 공판·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사법통제부장은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8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18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형사부장은 제18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중대범죄전담부장은 제18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⑦ 공판·송무부장은 제18조제7항·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3조(부산지방법공소청에 두는 부) ① 부산지방법공소청에 사법통제부, 형

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아동범죄전담부, 공공·형사부, 중대범죄전담제1부, 중대범죄전담제2부, 범죄수익환수부 및 공판·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사법통제부장은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8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18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형사부장은 제18조제5항·제6항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중대범죄전담제1부장 및 중대범죄전담제2부장은 제18조제6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공소청장이 정한다.

⑦ 범죄수익환수부장은 제18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⑧ 공판·송무부장은 제18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4조(울산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① 울산지방공소청에 사법통제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아동범죄전담부, 중대범죄전담부 및 공판·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사법통제부장은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8조제3항·제6항제3호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공소청장이 정한다.

다.

- ④ 여성·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18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⑤ 중대범죄전담부장은 제18조제5항·제6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⑥ 공판·송무부장은 제18조제7항·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5조(창원지방법공소청에 두는 부) ① 창원지방법공소청에 사법통제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중대범죄전담부 및 공판·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 ② 사법통제부장은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공소청장이 정한다.
- ④ 중대범죄전담부장은 제18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⑤ 공판·송무부장은 제18조제7항·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6조(광주지방법공소청에 두는 부) ① 광주지방법공소청에 사법통제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아동범죄전담부, 공공·형사부, 중대범죄전담부 및 공판·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 ② 사법통제부장은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8조제3항에 규정

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18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형사부장은 제18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중대범죄전담부장은 제18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⑦ 공판·송무부장은 제18조제7항·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7조(전주지방법공소청에 두는 부) ① 전주지방법공소청에 사법통제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및 중대범죄전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사법통제부장은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중대범죄전담부장은 제18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8조(제주지방법공소청에 두는 부) ① 제주지방법공소청에 사법통제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사법통제부장은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8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공소청장이 정한다.

제39조(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범위)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인천 지방공소청 부천시청,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시청에 각 차장검사 1명을 둔다.

제40조(지청에 두는 부) ①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에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 및 공판·송무부를 두고,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시청 및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에 각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 및 공판·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시청에 각 형사제1부·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두고,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시청,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시청,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시청,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시청,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 및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시청에 각 형사제1부 및 형사제2부를 두며,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시청,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 대전지방공

소청 서산지청,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 및 대구지방공소청 경주지청에 각 형사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 제1항의 각 형사부장은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하고, 제2항의 각 형사부장은 제18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지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8조 중 “공소청장”은 “지청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각 공판·송무부장은 제18조제7항·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1조(지방공소청 사무국) 지방공소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42조(지청 사무국) ①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시청,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에 각 사무국을 둔다.

②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시청,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대구

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의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3조(지방공소청 및 지청 사무국에 두는 과 및 과장의 보임 직급) ①

각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사무국에 별표 4와 같이 과를 둔다.

②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그 밖의 지방공소청의 총무과장은 각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사건과장·집행제1과장·집행제2과장·기록관리과장·형사증거과장·피해자지원과장·범죄수익환수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서울동부지방공소청 공소사무과장,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집행과장·범죄수익환수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집행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서울서부지방공소청 집행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의정부지방공소청 집행과장, 인천지방공소청 사건과장, 수원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및 집행과장, 대전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대구지방공소청 사건과장·집행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부산지방공소청 사건과장·집행과장 및 범죄수익환수과장, 울산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및 집행과장, 광주지방공소청 사건과장·집행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전주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및 집행과장, 제주지방공소청 집행과장은 서기관으로 각 보한다.

④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및 집행과장,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사건과장,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사건과장, 서울서부지방공소청 사건과

장, 의정부지방법공소청 사건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인천지방법공소청 집행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춘천지방법공소청 사건과장, 수원지방법공소청 공소사무과장, 대전지방법공소청 집행과장, 청주지방법공소청 사건과장 및 집행과장, 부산지방법공소청 공소사무과장, 창원지방법공소청 사건과장 및 집행과장, 제주지방법공소청 사건과장은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으로 각 보하고, 춘천지방법공소청 집행과장은 형사법무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의정부지방법공소청 고양지청 · 인천지방법공소청 부천지청 · 수원지방법공소청 성남지청 · 수원지방법공소청 안산지청 · 수원지방법공소청 안양지청 · 대전지방법공소청 천안지청 · 대구지방법공소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법공소청 순천지청의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부산지방법공소청 동부지청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으로, 부산지방법공소청 서부지청 총무과장은 형사법무사무관으로, 의정부지방법공소청 고양지청 · 인천지방법공소청 부천지청 · 수원지방법공소청 성남지청 · 수원지방법공소청 안산지청 · 수원지방법공소청 안양지청 · 대전지방법공소청 천안지청 · 대구지방법공소청 서부지청 · 부산지방법공소청 동부지청 · 부산지방법공소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법공소청 순천지청의 사건과장과 집행과장은 형사법무사무관으로 각 보한다.

⑥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리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발송, 통제, 편찬, 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 조달,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8. 전산·통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직원의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과 법령에 관한 사항
10.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검사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진정·탄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통계에 관한 사항
5.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집행과장(서울중앙지방법공소청의 경우에는 집행제1과장과 집행제2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가납재판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

⑨ 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장에 관한 사항
2.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
3.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⑩ 형사증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압수금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⑪ 피해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해자 상담, 통지, 기록열람 및 증거물 반환 등에 대한 지원
2. 법정안내 및 증언시 지원
3. 피해자 지원단체와의 연락·조정
4.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

⑫ 범죄수익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범죄수익의 추적·환수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 검사의 범죄수익환수 업무 지원
3. 그 밖에 제1, 2호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

⑬ 공소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사의 제15조제4항 및 제18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업무 지원

2. 호송, 인치, 당직(영장)에 관한 사항

3.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

⑭ 기록관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는 기록관리과장의 분장사무는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다만, 기록관리과를 두지 아니하고 집행과를 두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과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장이 분장한다.

⑮ 형사증거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는 형사증거과장의 분장사무중 압수금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⑯ 피해자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는 피해자지원과장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⑰ 범죄수익환수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는 범죄수익환수과장의 분장사무를 공소사무과장이 분장한다.

⑱ 공소사무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소사무과장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단, 재산형 이외의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관한 사항 및 호송·인치·당직(영장)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장이 분장한다.

제44조(지방공소청 지청에 두는 과 및 과장의 보임 직급) ①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방공소청 지청에 사무과를 두며,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대구지방공소청 경주지청·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및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의 사무과장은 서기관으로 각 보하고,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 및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은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으로 각 보하며, 춘천지방공소청 속초지청·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대전지방공소청 공주지청·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청주지방공소청 제천시청·청주지방공소청 영동지청·대구지방공소청 상주시청·대구지방공소청 의성지청·대구지방공소청 영덕지청·창원지방공소청 밀양지청·창원지방공소청 거창지청·광주지방공소청 장흥지청·광주지방공소청 해남지청 및 전주지방공소청 남원지청의 사무과장은 형사법무사무관으로 각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지방공소청 사무국 각 과장의 분장사무를 분장한다.

③ 제1항의 지청 중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및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에는 사무과 외에 집행과를 두며, 각 집행과장은 형사법무사무관으로 보

한다.

④ 제3항의 집행과장은 제43조제8항·제14항 단서 및 제18항 단서에
서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5조(분장사무의 지정·협조) ① 부장 또는 과장 간의 업무분장이 경
합 또는 불분명할 때에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차장검사(차
장검사가 2인 이상인 청은 제1차장검사, 차장검사를 두지 아니한 청은
청의 장)가 담당부장 또는 담당과장을 지정한다.

② 담당업무가 다른 부장 또는 과장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당
해부장 또는 과장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
다.

제5장 기타

제46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5와
같다.

제47조(부서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법무부장관은 「검사정
원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각 검사 정
원을 조정하여 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은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 및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보는 사람의 종전 검찰청에서의 재직기간·경력 및 보직은 공소청 검사로서의 재직기간·경력 및 보직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의 직렬·직급 및 직위는 종전 검찰청에서의 직렬·직급 및 직위에 상응하는 공소청의 직렬·직급 및 직위로 하며, 그 구체적인 대응관계는 별표 6에 따른다.

④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종전 검찰청 정원 8,414명(고공단 26명, 3급 또는 4급 18명, 4급 117명, 4급 또는 5급 74명, 5급 497명, 6급 1,669명, 7급 1,957명, 8급 1,464명, 9급 2,492명, 연구직 등 10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공소청의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소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검사 외의 공소청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총계	404
일반직 계	404
고위공무원단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
서기관	2
과학기술서기관	1
임기제 서기관(비상안전담당관)	1
서기관·형사법무사무관	9
서기관·형사법무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과학기술서기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형사법무사무관	37
형사법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형사법무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
형사법무주사	57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7
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2
방호주사	1
형사법무주사보	49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7
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
임업주사보	1

운전주사보	2
통계주사보	1
형사법무서기	36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4
사서서기	2
방호서기	2
시설서기 또는 공업서기	1
형사법무서기보	4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7
운전서기보	9
방호서기보	11
기계운영서기보	1
시설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2
사무운영서기보	36
공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심리연구관 또는 학 예연구관	9
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 환경연구사 · 심리연구사 또는 학 예연구사	39
기록연구사	5
전문경력관 가군(비상안전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범죄분석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형사사진감식 · 문서감정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통역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양성평등정책 담당)	1

[별표 2]

검사 외의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총계	5,716
일반직 계	5,716
고위공무원단	25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6
서기관	84
서기관 · 형사법무사무관	53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
형사법무사무관	295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형사법무주사	1,015
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9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9
운전주사	1
방호주사	1
형사법무주사보	1,137
사서주사보	2
사서주사보 또는 기록연구사	1
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3
임업주사보	1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3
운전주사보	2
방호주사보	2
형사법무서기	964

시설서기 또는 공업서기	46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6
위생서기	1
운전서기	15
방호서기	9
형사법무서기보	631
시설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21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30
운전서기보	207
방호서기보	130
보건연구사	2
기록연구사	23
건축운영서기보	1
전기운영서기보	3
열관리운영서기보	9
사무운영서기보	870

[별표 3]

각 광역공소청의 사무국에 두는 과(제17조제2항 관련)

청 명	과
서울광역공소청	총무과, 사건과, 소송사무과, 관리과
수원광역공소청	총무과, 사건과
대전광역공소청	총무과, 사건과
대구광역공소청	총무과, 사건과
부산광역공소청	총무과, 사건과
광주광역공소청	총무과, 사건과

[별표 4]

각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사무국에 두는 과(제44조제1항 관련)

청 명	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총무과, 사건과, 집행제1과, 집행제2과, 기록관리과, 형사증거과, 피해자지원과, 범죄수익환수과, 공소사무과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공소사무과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범죄수익환수과, 공소사무과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공소사무과
서울서부지방공소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공소사무과
의정부지방공소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공소사무과
인천지방공소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공소사무과
춘천지방공소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수원지방공소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공소사무과
대전지방공소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청주지방공소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대구지방공소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공소사무과
부산지방공소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범죄수익환수과, 공소사무과
울산지방공소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창원지방공소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광주지방공소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공소사무과
전주지방공소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제주지방공소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별표 5]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6조제1항 관련)

1. 공소청

조직	정원	평가기간
가. 형사부 형사기획관	6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나. 형사부 특별사법경찰협력과	5명 (5급 1명, 6급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다. 중대범죄부	0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라. 중대범죄부 중대범죄기획관	6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2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마. 중대범죄부 중대범죄1과	5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바. 중대범죄부 중대범죄2과	5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사. 중대범죄부 중대범죄3과	5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2. 공소청 소속기관

조직	정원	평가기간
가. 서울중앙지방법공소청 제1차장검사 사법통제제1부	6명 (6급 2명, 7급 3명, 9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나. 서울중앙지방법공소청 제1차장검사 사법통제제2부	6명 (6급 2명, 7급 3명, 9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다. 서울중앙지방법공소청 제2차장검사 여성아동범죄전담제2부	0명	2027년 9월 30일까지
라. 서울중앙지방법공소청 제3차장검사 중대범죄전담제1부	5명 (6급 2명, 7급 1명, 9급 2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마. 서울중앙지방법공소청 제3차장검사 중대범죄전담제2부	7명 (6급 2명, 7급 2명, 9급 3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바. 서울중앙지방법공소청 제3차장검사 중대범죄전담제3부	5명 (6급 1명, 7급 2명, 9급 2명)	2029년 6월 30일까지
사. 서울중앙지방법공소청 제3차장검사 중대범죄전담제4부	5명 (6급 2명, 7급 2명, 9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아. 서울중앙지방법공소청 제3차장검사 중대범죄전담제5부	5명 (6급 2명, 7급 2명, 9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자. 서울중앙지방법공소청 제3차장검사 중대범죄전담제6부	4명 (6급 1명, 7급 1명, 9급 2명)	2029년 6월 30일까지

차.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사법통제부	6명 (6급 2명, 7급 3명, 9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카.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중대범죄전담제1부	5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타.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중대범죄전담제2부	7명 (5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3명)	2029년 6월 30일까지
파.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제1 차장검사 사법통제부	6명 (6급 2명, 7급 3명, 9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하.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제2 차장검사 중대범죄전담제1부	6명 (6급 2명, 7급 2명, 9급 2명)	2029년 6월 30일까지
거.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제2 차장검사 중대범죄전담제2부	10명 (6급 3명, 7급 3명, 9급 4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너.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제2 차장검사 중대범죄전담제3부	7명 (6급 2명, 7급 2명, 9급 3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더.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사무국 범죄수익환수과	7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9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러.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사법통제부	6명 (6급 2명, 7급 3명, 9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머.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중대범죄전담부	6명 (6급 2명, 7급 2명, 9급 2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버. 서울서부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사법통제부	6명 (6급 2명, 7급 3명, 9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서. 서울서부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중대범죄전담부	6명 (6급 2명, 7급 2명, 9급 2명)	2029년 6월 30일까지
어. 의정부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사법통제부	6명 (6급 2명, 7급 3명, 9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저. 의정부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중대범죄전담부	15명 (6급 4명, 7급 5명, 8급 1명, 9급 5명)	2029년 6월 30일까지
처.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차장검사 공판송무부	12명 (6급 1명, 8급 3명, 9급 8명)	2029년 6월 30일까지
커. 인천지방공소청 제1차장검사 사법통제부	6명 (6급 2명, 7급 3명, 9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터. 인천지방공소청 제2차장검사 중대범죄전담부	7명 (6급 2명, 7급 3명, 9급 2명)	2029년 6월 30일까지
퍼.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차장검사 공판송무부	12명 (6급 1명, 7급 2명, 8급 4명, 9급 5명)	2029년 6월 30일까지
허. 춘천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사법통제부	6명 (6급 2명, 7급 3명, 9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고. 수원지방공소청 제1차장검사 사법통제부	6명 (6급 2명, 7급 3명, 9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노. 수원지방법공소청 제2차장검사 중대범죄전담제1부	8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 급 3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도. 수원지방법공소청 제2차장검사 중대범죄전담제2부	6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 급 3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로. 수원지방법공소청 제2차장검사 중대범죄전담제3부	9명 (6급 3명, 7급 2명, 9급 4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모. 수원지방법공소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공판송무부	13명 (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9급 5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보. 대전지방법공소청 차장검사 사법통제부	6명 (6급 2명, 7급 3명, 9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소. 대전지방법공소청 차장검사 중대범죄전담제1부	8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3명)	2029년 6월 30일까지
오. 대전지방법공소청 차장검사 중대범죄전담제2부	6명 (4급 또는 5급 4명, 9급 2명)	2029년 6월 30일까지
조. 대전지방법공소청 차장검사 중대범죄전담제3부	6명 (6급 2명, 7급 2명, 9급 2명)	2029년 6월 30일까지
초. 대전지방법공소청 천안지청 형사제3부	10명 (6급 3명, 7급 4명, 9급 3명)	2029년 6월 30일까지
코. 청주지방법공소청 차장검사	6명	2029년 6월 30일까지

사법통제부	(6급 2명, 7급 3명, 9급 1명)	
토. 청주지방법공소청 차장검사 중대범죄전담부	10명 (6급 3명, 7급 3명, 8급 1명, 9급 3명)	2029년 6월 30일까지
포. 부산지방법공소청 차장검사 사법통제부	6명 (6급 2명, 7급 3명, 9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호. 부산지방법공소청 차장검사 중대범죄전담제1부	6명 (6급 1명, 7급 2명, 9급 3명)	2029년 6월 30일까지
구. 부산지방법공소청 차장검사 중대범죄전담제2부	6명 (6급 1명, 7급 2명, 9급 3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누. 창원지방법공소청 차장검사 사법통제부	6명 (6급 2명, 7급 3명, 9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두. 창원지방법공소청 차장검사 중대범죄전담부	7명 (6급 2명, 7급 2명, 9급 3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루. 창원지방법공소청 마산지청 형사제2부	8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3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무. 울산지방법공소청 차장검사 사법통제부	6명 (6급 2명, 7급 3명, 9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부. 울산지방법공소청 차장검사 중대범죄전담부	7명 (6급 2명, 7급 2명, 9급 3명)	2029년 6월 30일까지
수. 대구지방법공소청 차장검사	6명	2029년 6월 30일까지

사법통제부	(6급 2명, 7급 3명, 9급 1명)	
우. 대구지방법공소청 차장검사 중대범죄전담부	6명 (6급 2명, 7급 2명, 9급 2명)	2029년 6월 30일까지
주. 광주지방법공소청 차장검사 사법통제부	6명 (6급 2명, 7급 3명, 9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추. 광주지방법공소청 차장검사 중대범죄전담부	8명 (6급 3명, 7급 2명, 9급 3명)	2029년 6월 30일까지
쿠. 전주지방법공소청 차장검사 사법통제부	6명 (6급 2명, 7급 3명, 9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투. 전주지방법공소청 차장검사 중대범죄전담부	6명 (6급 2명, 7급 2명, 9급 2명)	2029년 6월 30일까지
푸. 제주지방법공소청 차장검사 사법통제부	6명 (6급 2명, 7급 3명, 9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별표 6]

공소청 직렬·직급 대응표(부칙 제3조제3항 관련)

○ 직렬

검찰청	검찰	마약수사
공소청	형사법무	형사법무

○ 직류

검찰청	검찰	마약수사
공소청	형사법무	형사법무

○ 계급 및 직급

구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검찰청	검찰 부이사관	검찰 수사 서기관	검찰 사무관	검찰 주사	검찰 주사보	검찰 서기	검찰 서기보
공소청	부이사관	서기관	형사법무 사무관	형사법무 주사	형사법무 주사보	형사법무 서기	형사법무 서기보